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체육시설의 시설, 안전·위생 기준 관련 이용자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

3. 주요내용

- (내용) 체육시설 및 개별종목의 시설 및 안전·위생 기준 개선
 - (스키장 안전기준 강화) 어린이 이용객 안전모 착용 의무화하고자 함
 - * (당초) 안전모 착용 지도 → (개정) 어린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
(시행규칙 23조 관련 [별표 6] 안전·위생 기준 나. 스키장업)
 - (수영장 안전요원 민간자격 구제) 수상레저안전법(해양경찰청) 개정에 따른 민간자격 폐지에 따라,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을 일정 기간(3년/‘25.12.20.) 존속
 - * (당초) 해경청장 지정 교육기관 자격 폐지(25.12.21.) → (개정) 자격 유효기간 내 유효
(시행규칙 23조 관련 [별표 6] 안전·위생 기준 사. 수영장업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 2) 입법예고 예정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6 나. 스키장업 "(5)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"를 "(5)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어린이 이용자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"로 하며, "(6)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"를 신설한다.

별표 6 사. 수영장업 (5) "(마)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"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①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23조 및 별표 6 사. 수영장업 5항 마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의 유효기간 중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한정한다.
-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인명 구조요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·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제23조 및 별표 6 사. 수영장업 5항 마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·위생 기준(제23조 관련) 나. 스키장업 (5)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>	(5) ----- ----- <u>다만 어린이 이용자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</u> (6) <u>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.</u>
사. 수영장업 (5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(이하 이 목에서 "수상안전요원"이라 한다)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. 다만, 모든 수영조가 교습 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. (마)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	(5) (현행과 같음) (마) 삭제
부 칙 <신설>	<u>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에 관한 경과 조치)</u> <u>①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</u>

현행	개정안
	한다.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23조 및 별표 6 사. 수영장업 5항 마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의 유효 기간 중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한정한다.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·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제23조 및 별표 6 사. 수영장업 5항 마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56